2020년 정기국회 주요 노동복지 쟁점법인에 대한 한국노총 핵심요구

2020.11.23.



한국노총 7대 핵심요구

- 1.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및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
- 2. 특수고응노동자 고응보험 확대
-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4. 취약계층 노동자의 최저 노동조건 보장
 - 1) 5인 미만 시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 2) 1년 미만 근속 노동자의 퇴직급여 보장
- 5. 최저임금제도 개선
- 6.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초석,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 7. 공정경제3법을 넘어 '경제민주화5법' 추진

1.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및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

■ 입법 필요성 및 주요쟁점

- O 역대정권의 국제사회에 대한 거듭된 약속이행 필요
- 우리나라는 1991년 ILO 가입이후, 국제사회에 수차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최근 한-EU FTA 무역분쟁 비화된 상황
-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ILO핵심협약의 비준동의 및 핵심협약 취지에 충실한 최소한의 입법조 치 필요성
- O ILO핵심협약과 무관한 사용자 대항권 강화 목적의 노동법 개악안 철회
- ILO핵심협약 무관하게 현행 노동기본권 후퇴시키는 내용이 담겨져 있음.
- ▶ 파업 시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전면 금지
 - → 정부안은 "생산 및 기타 주요업무 관련 시설 … 일부, 전부를 점거하는 쟁의행위" 전면 금지
 - →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부분적이고 병존적인 점거형태의 사업장내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대법원 2007.12.28. 2007도5204 등).
- → 기업별 노조가 대부분인 우리 현실에서 사업장내 피케팅·농성 등 보조적 형태의 쟁의권 행사조차 불가능하게 되고, 노조의 파업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초래
- ▶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 2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
- → 새로 선출된 노조대표자가 임기동안 한번도 못하는 문제 야기(교섭대표노조 지위와 맞물려 최대 5년간 교섭이 불가능)
- ▶ 해고자 등 종업원 아닌 자의 기업별 노조활동 허용한다고 하면서도 △종업원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제한 △대의원 및 임원 자격 제한
 - → 비종업원인 조합원의 시업장 출입 및 시설사용에 관한 시업장 내부규칙 또는 노사 합의절차를 두 도록 함(상급단체 노조간부, 신별노조 간부의 출입 및 노조 지원활동 제한우려)
 - → 비종업원인 조합원의 기업별 노조의 대의원 및 임원자격 제한 : 노조간부의 자격조건에 대해선 노조 규약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ILO의 입장과 명백히 배치됨(ILO 판정집 No. 606).
- 노조전임자 급여 및 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입법적 개입 해소
 - 정부안은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및 관련 쟁의행위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반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무효,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 → 전임자 급여문제에 관한 ILO 권고와 국제노동기준은 국가가 입법적 개입을 하지 말고 노사자 율에 맡기라는 것으로 정부안은 명백한 국제기준 위반임(ILO협약 제98호 제2조, 제4조 및 ILO, Freedom of Association 2018, para. 1607.).
- ※ <u>정부 및 여·야 의원 모두가 ILO핵심협약에 반하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타임</u> 오프 문제 개선을 위한 법률안을 제출한 만큼 반드시 관련 법률 개정이 요구됨.

〈참고 1〉 전임자 임금 관련 정부, 여야 법률개정안 비교

전부안 (PLATE OF ALL)		이수진 의원안	박대수 의원안
0T2	(더민주, 환노위 간사)	(더민주, 비례)	(국민의힘, 비례)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 전임자 급여지급은 노	▶ 근로시간면제한도 설정
금지 규정 및 관련	금지규정 및 관련 쟁	<u>사자율로 정함</u> (노조전	시 사업장의 지역적 분
쟁의행위 금지 규정	의행위 금지규정 삭제	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포, 근무형태 등 사업
삭제	▶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금지 규정 및 근로시간	장 특성 고려
▶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하는 단체협약 또	면제한도 규정 폐지)	▶ <u>상급단체 파견전임자에</u>
(타임오프)를 초과하	는 노사합의 무효로		<u>대한 별도의 근로시간</u>
는 단체협약 또는 노	하되,		<u>면제한도 허용</u>
사합의는 무효, 타임	▶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 <u>타임오프 한도를 초과</u>
오프 한도를 초과하	하는 급여지급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하는 급여지급 행위를
는 급여지급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관련 조항 삭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한 조항 삭제_		<u>조항 삭제</u>

■ 한국노총 핵심요구

-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노동기본권 보장
- 정부입법안 내용중 타임오프 한도 초과하는 노사합의 무효,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부 당노동행위로 규정한 관련 조항 삭제
- 설립신고서 접수 즉시 설립필증 교부, 설립신고 반려제도 폐지 등 노조설립 신고제도 의 문제점 개선
- 국공립대학 조교의 노조활동 허용(교수, 교직원 등의 노조활동 허용에도 불구하고 노조활동 허용이 배제된 국공립대학 조교의 노조활동 허용)
- O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제도 차별 없이 적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정부개정안과 한국노총 수정요구안 비교 >

구 분	정부안 (2020.6.30.)	한국노총 요구안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 실업자, 해고자의 노조활동 허용하되 '근 로자 아닌 자' 포함시 노조 아니다(노조 법 제2조 4호 '라목' 단서 조항만 삭제)	- 노조법 제2조 '라목'전체 삭제
종사자 아닌 조합원의 노조활동 제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은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음. 사업장 출입 및 시설사용에 관한 노사합의 절차 또는 사업장 규칙준수 의무부여 	- <u>삭제</u> (재직자 아닌 조합원의 노조활동 제한 규정 삭제)
노동조합 설립	- 없음.	-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반려조항 삭제
노조 임원자격	-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u>기업별 노조의</u> 경우 임원이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	-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 으로 정하도록 함(재직자 아닌 자의 임원 자격 제한 규정 삭제)
전임자 및 근로시 간 면제제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함.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부노로 처벌함.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 위원회에 설치하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단체, 경영자단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함. 	- <u>노조전임자 관련 급여지급 및 타임오</u> <u>프는</u>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u>노사자율</u> <u>로 결정</u> 하도록 함 <u>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u> 지급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는 조항 삭제
교섭창구단일화	 개별교섭 시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됨.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현행 2년에 서 3년으로 연장함.	- <u>삭제(현행 유지)</u>
사업장내 직장점거 금지	- 생산 및 그 밖의 주요업무에 관련된 시설 등에 대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 <u>삭제(현행 유지)</u>

2. 특수고응노동자 고응보험 확대

■ 입법 필요성 및 주요쟁점

- 코로나19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고용보험제도 체계로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 등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노무제공자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코로나19 위기극복 노사정 협약(2020. 7. 28.)"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고용보험'을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 특수 고용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한 입법이 추진되어야 함.

O 정부입법안의 문제점

- ▶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이 아닌 특례규정을 통한 적용확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정형 노동자의 포괄적·보편적 사회안전망 확보에 한계가 있음.
- ▶ 정부입법안은 '노무제공계약'을 전제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특 수고용노동자들은 계약체결을 아예 하지 않거나, 구두계약만으로 일하는 경우도 대 부분임.
- ▶ 시행령에 의해 '전속성'(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을 기준으로 적용여부 를 결정하는 것은 '전국민고용보험제도' 자체와 배치되는 것임.

■ 한국노총 핵심요구

- 코로나19 고용·경제위기 극복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국민고용보험제' 시행을 위해 서는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근본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지금 당장 생계위 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고용형태근로종사자를 넓게 포괄하는 방식으로 적용대상 규정하여야 적절한 보호방안이 될 것임.
 - ▶ 2018.7.13.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를 종전의 근로 기준법의 근로자만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노무제공자'로 확대하고자 한 것임.
- O '전속성' 판단요건 폐지를 통한 모든 직종·업종 고용보험 당연적용·의무가입
- O 고용보험 수급요건 추가·완화
 - ▶ 코로나19 감염 등 사회재난 시기 및 긴급하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고용부헌법	정부개정안	(2020.9.11.)	
ᅩ오ᄆᄆ	01/100	12020.0.11./	

한국노총 수정 요구

- 제8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 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 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이 법은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77조의6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적용하되, 제5장의2 또는 제5장의3에서 규정된 사항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
- 제8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이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적용한다.다만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제10조제6호 단서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만 사용하는사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근로자
 -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수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이 하 "자영업자"라 한다)로서 고용노동부령에 따 라 이 법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
 - 3. 제1호 및 제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람
- ※ 제6차 고용보험위원회(2018.7.31)에서 심의하고 의결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법률안 발의와 법안심의 필요

O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 주요발의 입법현황

의안번호	대표발의 의원	주요 내용
2103779	정부안 (2020. 9.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의무 가입(별도 특례규정, '근로자가 아님'규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등 근거 마련(분담비율은 시행령으로 규정) ▶소득 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에도 실업급여 수급 인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 보험재정 통합 운영
210030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의무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등 근거 마련(분담비율 1/2씩 법률에 규정)
2100304	강은미(정의당, 비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 가입 (별도의 특례규정 없음) ▶소득보전급여 신설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지급)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입법 필요성 및 주요쟁점

- 우리나라 산재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산재사망 노동 자 중 하청노동자 사망비율이 무려 40%에 달하고 있음.
- 산재사망 사고는 미비한 법적 제재, 즉 사업주에 대한 법적 책임·처벌이 미비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임. 즉, 다단계 원하청 구조로 인해 원청업체에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제재방식 부과를 통해 산재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식이 필요함.
 -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안, 2020. 11/7, 의안번호: 2105405)은 중대재 해 사업장의 사업주 및 법인의 처벌 하한선이 없어지게 되어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 2009년 이후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금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0.57%에 그치고 있어(6,144건의 1심 재판 중 35건만 자유형이 선고됨)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사업주 와 법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움.

■ 한국노총 핵심요구

- 중대재해기업처벌법(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등) 제정을 촉구함.
- O 사업주 등 경영 책임자 및 정부책임자 처벌(처벌의 하한 설정 및 벌금 강화)
- 중대재해 발생 법인에 대해서 하한선이 있는 벌금형 도입 및 작업중지, 영업정지, 안 전보건교육 수강 등 처벌 및 병과
- O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과 더불어민주당(박주민 의원) 추진법안 비교 >

구 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한국노총 수정요구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및 정부책임자 처벌법안 :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020.11.12)
적용범위	- 모든 사업에 적용, 다만 여러 사항을 고 려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 전부 또는 일 부 전용(산안법 제3조 적용 범위)	- 시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인체 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 취급장소(장소 개념 을 포괄하여 서비스, 재화 등 모든 재난)
중대재해 정의	- 사망자 1명 · 3개월 이상 요양자 2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질병자 동시에 10명 이상 (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 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로 구 분하여 구분하여 적용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 장해등급 중증요양자 1명

구 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한국노총 수정요구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및 정부책임자 처벌법안 :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020.11.12)
		 고의로 재해은폐 또는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재해 중대시민재해 사망자 1명 부상자 또는 질병자 동시에 10명 이상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산안법 제1조 목 적)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 등으로 시민과 노동자를 모두 포함 · 종사자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계양형식에 관계없이 보수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단계 도급의 경우 관계수급인 등
처벌대상	- 위반 행위자, 시업주, 법인	-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으로 구분하여 처벌 ·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경영책임자: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 등의 장(기관의 장),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 ·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자
처벌근거	 구체적인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안법 제173조양벌규정). 	 중대신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나눠서 각각 의무를 규정함. 중대산업재해 · 중대산업재해 : 안전·보건조치 의무, 도급 및 위탁관계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 귀속 · 중대시민재해 :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의무, 도급 및 위탁관계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중대산업재해 규정 준용) - 인과관계의 추정 · 제3조 의무 위반사실이 수사기관 또는 관련 행정청에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 증거인멸·현장훼손 등 원인규명, 진상조사, 수사 등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 방조
처벌종류	- 사망 · 개인 :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5년 이내 같은 죄를 반복 시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 법인 : 10억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 사망 ・ 사망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때 5년 이상의 유

구 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한국노총 수정요구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및 정부책임자 처벌법안 :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020.11.12)
	- 위반으로 인한 상해 등 · 위반에 대해 N년 이하의 징역 또는 N천만원 이하의 벌금(N = 1~5)	기징역 - 상해 ·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가중 : 2명 이상 사망 또는 6개월 이상 요양자 3명 이상 발생 시 형의 장기 또는 다액 합산 · 법인 처벌 -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 -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안전보건상의 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할 시 전년도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10 범위 내 벌금 가중 - 병과 : 작업중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공계약배제, 자금의 공모금지 등 · 공무원 처벌 - 결재권자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관리 준수 여부의 감독, 인·허가 및 감독 등에 사항
병과	-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200시간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산안법 제174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손해배상 : 손해액의 5배(최저한도) 이상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작업중지, 영업정지, 안전보건교육 : 산안법에서 '할 수 있다'정도로 규정한 내용 등을 '지체없이' '반드시'등으로 강화
부칙	_	- 공포 후 1년 뒤 시행 - 개인사업주,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 보건조치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전제로 4년 유예

4. 취약계층 노동자의 최저 노동조건 보장

1) 5인 미만 시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 문제점 및 입법 필요성

O 현행 근기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및 연장노동 제한, 연차휴가, 해고제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 주요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이 적

용배제조항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상시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근기법 회피수단이 횡행하고 있음.

- ▶ 이와 같은 문제로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2012년 국회 입법조사처의 제도개선 제시, 2018년 법제처의 차별법령 정비과제 보고, 2018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 등 근로기 준법 적용 확대를 통한 법제도 개선 권고가 있어왔음.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사실상 '무법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한국노총 핵심요구

- O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을 통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근로기준법이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법률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전면 적용

< 현행 근로기준법 및 한국노총 수정요구 법안 비교 >

- LO LO LO LO X	<u> </u>
현행 근로기준법	한국노총 수정 요구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382 :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020, 9.29)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 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 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	제11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u>모</u> <u>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u> <삭 제>
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2) 1년 미만 근속 노동자의 퇴직급여 보장

■ 문제점 및 입법 필요성

O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고 함)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서 적용대상을 한정하여 1년미만 계속근로기간 노동자는 합법적으로 퇴직급여를 보장받지 못하는 역설정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더불어 현행 계약형(contract-type) 구조 아래에서 나타나는 저조한 수익률 및 고정된 수수료 등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된 바 있는 (연합)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도입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함.

■ 한국노총 핵심요구

- O 1년 미만 계속근로기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전면보장
- O 합리적 제도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도입(100인 이하)

< 퇴직급여보장법 개정법률안 주요발의 입법현황 >

의안번호	대표발의 의원	주요 내용
2100172	이수진 의원 (2020. 6. 4.)	▶ 저소득 근로자들이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 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 도를 의무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안 제4조제1항 및 제12조의 2 신설).
2102324	안호영 의원 (2020. 7.23.)	 ▶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부터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 등을 위한 퇴직 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 기존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큰 대규모 사업장부터 규모별로 단계적 전환 ▶ 30인 이하 중소영세기업에 근로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
2103174	한정애 의원 (2020. 8.24.)	▶ 기금형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노사의 무관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성과 함께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 운영방법(기금형)을 도입하여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생활보장 기능 강화함.

5. 최저임금제도 개선

■ 문제점 및 입법 필요성

- 현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물거품이 된 데이어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반영'. '위반 제재 강화' 등도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최근 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임금항목 증가로 인해 연장·휴일근무 등을 통한 가산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한국노총 핵심요구

- O 최저임금 결정기준 내 가구생계비 반영
- O 최저임금 위반 제재강화
- O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함.

< 현행 근로기준법 및 한국노총 수정요구 법안 비교 >

현행 근로기준법	한국노총 수정요구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529 :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1.19)
제2조(정의) ①② (생 략)	제2조(정의)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신 설>	①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한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초석,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 문제점 및 입법 필요성

- 사회서비스는 돌봄의 사회화라는 공공적 취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역할 부재로 사실상 민간 전달체계에 의존하고 있음.
 - ▶ 시설수를 기준으로 볼 때 국공립어린이집은 11.6%, 국공립노인요양시설은 2.9%에 불과할 정도로 민간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지배적임. 민간의 이윤추구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기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성 담보는 어려운 상황임.
- O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공식화하였으나, 20대 국회에서 제대로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폐기됨.
 - ▶ 국·공립 사회서비스기관을 늘리고 이를 광역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함 으로써 돌봄서비스 질을 표준화하는 동시에 사회서비스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

■ 한국노총 핵심요구

- 사회서비스원의 핵심내용이 포괄된 연내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안 / 의안번호 : 2100046) 조속한 입법추진
 - ▶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을 공공성·전문성·투명성 제고로 확고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사회서비스 질 제고, 종사자 등 처우개선과 관련된 책임 강화
 - ▶ 사회서비스원 수행사무를 지원하고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치,
 사무나 운영 및 국공립기관 수탁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 ▶ 시·도지사가 법률안 시행 전 사회서비스원과 유사한 사무수행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을 사회서비스원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함.

7. 공정경제3법이 아닌 `경제민주화5법' 추진

■ 문제점 및 입법 필요성

-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공정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이른바,'공정경제 3법'('상법' 일부개정 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제 정안)이 추진되고 있음.
- 위 공정경제3법은 일부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 실현과 사회양극화 해소에 많이 미흡함. 공정경제3법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경제민주화5법'을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심화될 경제양극화의 최소 안전판이 마련되어야 함.
 - ※ '공정경제3법'의 문제점
 - 상법 개정안에서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주주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제외됨.
 -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자·손자회사 지분보유 강화 대상에서 기존 대기업집단이 제외됨.
 -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서는 '계열분리명령제' 등 위법행위에 대한 교정수단 등이 제외됨.

■ 한국노총 핵심요구

- O 경제민주화 5법 추진
 - ▶ 상법 개정 :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통한 감사위원회 위원 독립성 확보, 이중(다중)대표소송 도입을 통한 자회사 견제, 단독주주권제도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 ▶ 공정거래법 개정 : 자손자 회사 지배 금지 및 지분보유 강화대상 확대 등 지주회사 규제 강화
 - ▶ 하도급법 개정 : 기술탈취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책임 강화 및 손해액 추정 법률적근거 마련, 기술탈취로 피해받은 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명

령제도'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등

-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대규모 점포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무휴업명령권 및 영업시간제한 명 령권 부여, 지역협력개발서 작성시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과 지역고용활성화 등 포함 등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 : 기술유용행위를 정의, 위·수탁기업간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협약체결 미이행에 대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위탁기업의 협약위반에 대해 징 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손해액의 3배) 등